

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제4호 중 “것”을 “것(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한 배출자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2호 중 “허용보관량의 준수 등 방치폐기물”을 “방치폐기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) ①법 제13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의 배출, 수집·운반, 보관, 중 간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과 같다. 1. ~ 2. (생 략) 3. 삭 제 4. 건설폐기물의 수집·운반, 보 관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 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 개 등을 설치할 것	제9조(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) ①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2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----- ----- ----- 것(「대기환경 보전법」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 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한 배출자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는 제 외한다) 5. ~ 10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제14조(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조건)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	제14조(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조건) ----- -----

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는 주변 환경보호 및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등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. 1. (생략) 2. <u>허용보관량의 준수 등 방치 폐기물 발생예방을 위하여 필 요한 조치사항</u> 3. (생략)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<u>방치폐기물</u> ----- ----- ----- 3. (현행과 같음)
--	--